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92
----------	-------

발의연월일 : 2024. 3. 4.

발 의 자 : 김은희 · 김희곤 · 황보승희
유경준 · 허숙정 · 하영제
권명호 · 송석준 · 지성호
안철수 · 최연숙 · 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치료를 위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에 대해 성폭력행위자가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그 경비부담의 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국가 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의료비 지원의 지원범위·절차,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으로 한다.

-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료비 지원) <신 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료비 지원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의료비 지원의 지원범위 · 절차,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 방법----- -----.